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64

발의연월일: 2025. 1. 21

발 의 자:김희정·박준태·김종양

김은혜 • 박성민 • 김상욱

우재준 · 서일준 · 권영진

서범수 · 김도읍 · 김승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거복지재단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되어,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·지원·주거실태조사, 주거복지 관련 자료 수집·조사·연구·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그런데 주거복지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「민법」상 재단법인으로 설립·운영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·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주거복지재단의 설립·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 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신설).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주거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주 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(이하 "주거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 주거안 정 및 주거수준 향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 거복지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및 지원
- 2.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주거실태 조사 지원
- 3.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체 계 구축
- 4.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5. 주거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- 6. 주거복지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· 조사 · 보급
- 7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
-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

- 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④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⑤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두며,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.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단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⑧ 재단은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
- ⑨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거복지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거복지재단(이하 "구법인"이라 한다)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주거복지재단(이하 "신법인"이라 한다)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를 승계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,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-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(公簿)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.
-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,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-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22조의2(주거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계층(이하 "주거취약계층"이 라 한다)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관련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 지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 을 설립한다.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. 1.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 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및 지 원 2.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 대주택의 입주자 주거실태 조 사 지원 3.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
	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및 <u>협력체계 구축</u> 4.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·보

급

- 5. 주거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에 대한 교육훈련
- 6. 주거복지에 관한 연구 및 관 런 자료의 수집·조사·보급
- 7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
-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 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④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⑤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대 표이사를 두며,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.
- ⑥
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단의

 설립・운영에 필요한 비용을

 지원할 수 있다.
-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.

8 재단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기 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 9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